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검증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전문교육 이수 시 동일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 대상 및 관련 서식에 전승교육사를 추가하고, 국가유산체제 시행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 추가(안 제5조, 제5조의2, 별표 1,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 1)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및 자격증 발급 대상에 전승교육사 추가
- 2)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 수정

나.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0조의3, 제17조의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00. ~ 2025.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유자”를 “보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유자”를 “보유자·전승교육사”로 한다.

제5조의2 중 “보유자”를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7조의6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보유자”를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

별표 1 제1호자목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란 중 “보유자”를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보유자”를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로 하며, 같은 호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

별표 1 제2호다목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란 중 “보유자”를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유자등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무형유산종목	() 무형유산	(명칭 :)				
	구분	[] 보유자	[] 전승교육사				
	인정일자	년 월 일					
	인정기관						
	전화번호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주소						
신청자격종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가능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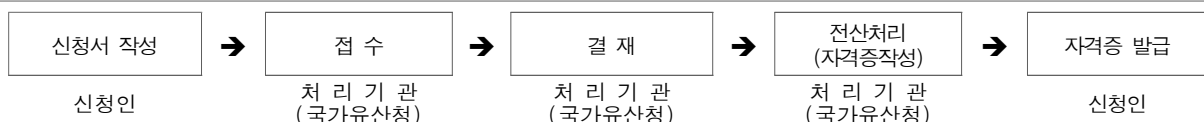
이
호
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사 인정서 사본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3.5cm×4.5cm) 2장
------	---

처리절차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무형유산종목 :

교육기간 : . . . ~ . . . (시간)

교육과정 : 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사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위 사람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의 교육을 수료하였으
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전 통 문 화 대 학 교 의 장

직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① (생략)	제5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u>보유자</u> 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u>보유자등</u> ----- ----- ----- ----- -----.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 <u>보유자</u> 인정서 사본	1. ----- ----- ----- ----- <u>보유자·전승교육사</u>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u>보유자</u> ”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 ----- ----- ----- ----- <u>보유자 및 전승교육사</u> -----.
제10조의3(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① 법 제14조의2제1	제10조의3(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① -----

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u>문화재수리</u> 능력 평가는 별표 1의2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하여 한다. ② ~ ⑥ (생략) 제17조의6(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파일의 규격 및 제출 방법 등은 <u>문화재청장</u>이 따로 정한다.	----- <u>국가유산수리</u>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의6(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 <u>가유산청장</u>-----.
--	---